

안전관리비 적용실태 및 산출방법 개선방안

한상준

인하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e-mail:sjhan@cak.or.kr

Safety Management Cost Application Status and Calculation Method Improvement Plan

Sang-Jun Han

Graduate Student, Dept. of Civil Engineering, Inha University

요약

국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용은 크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로 나눌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비용이며, 안전관리비는 목적물의 안전확보를 위한 비용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효율방식으로 되어 있어 공사비 산정시 누락됨이 없이 제대로 계상되고 있는 반면, 안전관리비는 구체적인 산출식이 없어 미계상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58건의 공공공사 설계내역을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안전관리비가 미계상된 공사가 20건 (34.5%)으로 나타나 미계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안전관리비 5개 항목의 비용산출에 필요한 비목과 설계기준, 투입공수 등을 제시함으로써 안전관리비 항목별 계상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단기적 방안 운용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분석하여 공사종류, 공사금액 등을 고려한 효율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1. 서론

국내 건설공사에 있어 안전관리에 관한 비용은 크게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로 나눌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확보를 위한 비용이며,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시공과정에서 구조물이나 공사현장 주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이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집행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안전관리비의 계상과 집행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산업안전관리비의 경우 효율방식¹⁾으로 되어 있어 계상이 쉽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는 반면, 안전관리비의 경우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계상이 어렵고 정부차원의 지도·감독 또한 다소 느슨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전관리비의 적용실태를 고찰해 보고 안전관리비 계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안전관리비 관련 규정 고찰

1) 공사비 1,000억원인 도로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 × 2.15%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서 공사비에 계상토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상항목과 산정기준에 관해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7에서 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항 목	내역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가. 안전관리계획 작성 비용 나. 안전관리계획 검토 비용
2. 안전점검 비용	가. 정기안전점검 비용 나. 초기점검 비용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 대책 비용	가.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비용 나. 발파·진동·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다.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라.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신호수 배치 비용	가.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신호수 배치 비용 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장 내부의 주요 지점별 건설기계·장비의 전담유도원 배치 비용 다.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5.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가. 계측장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다.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 관계전문가 확인 비용 라.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에 사용되는 무선설비 구입·대여·유지 비용과 무선 통신의 구축·사용 비용
------------------------	----------------------------------------------------------------------------------------------------------------------------------------------------

[표 1]의 안전관리비 항목별 비용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46조에서 제50조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5개 항목 중 “안전점검비용”에 대해서만 효율방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서술식 표현²⁾으로 되어 있어 그 비용을 계상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도 제대로 계상되지 않고 있다.

3. 안전관리비 적용실태

안전관리비가 계상되고 있는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58건 공공공사의 설계내역서를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공사의 공사규모는 최소 1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까지 분포하고, 공사종류는 토목공사 28건, 건축공사 28건, 조경공사 2건이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소방청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실태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안전관리비 적용실태 분석결과

구분	계	토목	건축	조경
계	58(100%)	28	28	2
안전관리비 계상	38(65.5%)	24	14	-
안전관리비 미계상	20(34.5%)	4	14	2

분석결과를 보면, 토목공사의 경우 전체 28건 중에서 24건(85.7%)이 계상되고 4건(14.3%)이 미계상되어 비교적 계상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건축공사의 경우 전체 28건 중에서 14건(50.0%)이 계상되고 14건(50.0%)이 미계상되어 계상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총 58건 중에서 38건이 계상되고 20건이 미계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미계상 비율이 34.5%로 썩 다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다만, 여기서 ‘계상’으로 집계한 것을 들여다 보면 [표 1]의

2)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며 직접인건비, 직접 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구성되고, 직접인건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투입인원수를 적용하여 계상한다고 규정

5개 항목 중 1개라도 계상되어 있으면 ‘계상’으로 집계하였으므로 계상비율이 높게 나타난 측면이 있으며, 5개 항목 모두 계상된 경우만을 ‘계상’으로 집계하면 계상비율은 낮아질 것이다. [표 1]의 5개 항목별 계상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안전관리비 5개항목별 계상실태 분석결과

안전관리비 항목	토목	건축
1. 안전관리계획 작성 검토비용	7	5
2. 안전점검비용	14	12
3. 발파·굴착 대책비용	5	2
4. 통행안전 및 교통안전 비용	22	3
5. 구조안전성 확보비용	15	8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안전관리비 계상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산정기준의 미비 등으로 인해 제대로 계상되고 있지 않으므로 안전관리비 계상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4. 안전관리비 산정기준 개선방안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비와 성격이 유사한 비용 항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가 있으며 산출방법은 [표 4]와 같다

[표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산출방법

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산정 방법	효율방식	직접계상 + 효율	직접계상
근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효율방식으로 되어 있어 대상금액에 효율만 곱하면 비용이 산출되는 구조이고, 환경보전비와 품질관리비의 직접계상방식 또한 구체적인 산출식으로 되어 있어 필요한 값을 대입하면 비용이 산출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반면, 안전관리비는 5개 항목 중 안전점검비용 만 효율방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4개 항목은 구체성이 없는 서술식으로 명시하고 있어 비용산출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같은 효율방식 혹은 환경보전비와 같은 직접계상+효율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효율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되

어 있어야 가능하나 현재로서는 안전관리비 계상과 사용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데이터 축적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안전관리비 5개 항목별로 각 항목의 비용산출에 필요한 비목과 설계기준, 투입공수 등을 제시함으로써 안전관리비 항목별 계상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앞서의 단기적 방안 운용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분석하여 공사규모, 공사기간 등을 고려한 효율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같은해 1월 11일 광주 화정동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를 비롯한 크고 작은 사고들로 인해 안전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졌다. 또한 최근 건설안전과 관련한 정책방향은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트렌드 변화와 정책변화를 감안할 때 안전관리비의 적정 계상을 통한 건설현장 안전확보는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관리비 계상실태와 안전관리비가 제대로 계상되지 않는 이유를 분석·제시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효율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다만, 구체적인 효율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공사종류, 공사금액 등 공사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비 계상 효율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1]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 2023
- [2]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2023
- [3]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2023
- [4]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2023
- [5] 국토교통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2023
- [6]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2023